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우석대학교 학칙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	☒ 개 정	☐ 폐 지
소관부서	학사관리팀	관련부서	해당사항 없음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사항 없음		
대학평의회	• 심의 해당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- 신산업·신기술·지역수요분야의 전공교육 강화를 위한 마이크로(나노)디그리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- 소단위 학위과정은 마이크로·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,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임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입법예고 -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- 마이크로(나노)디그리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「마이크로(나노)디그리 운영 규정」 제정을 통해 마이크로(나노)디그리를 운영하기 위한 정의, 개설,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		
기대효과	• 디그리 운영을 위한 전공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() 해당사항 있음(○)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 (포털 및 홈페이지)	반영 예정	
	다. 의견제출 유무	해당사항 없음() 해당사항 있음(○)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반영 예정	
첨부자료	「우석대학교 학칙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		

「우석대학교 학칙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u>(신설)</u>	<u>제49조의3(소단위학위과정)①신산업·신기술·지역수요분야의 전공교육 강화를 위한 소단위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소단위학위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 <u>[본조 신설 2023.00.00.]</u>
<u>(신설)</u>	<u>부 칙</u> <u>이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우석대학교 학칙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		

「우석대학교 학칙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24조(재입학)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<u>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자퇴 또는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과(부)의 동학년 이하로</u>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(부)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 또는 권고 등에 의하여 재입학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③재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24조(재입학)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<u>재입학</u>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(부)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
<u>(신설)</u>	<u>부 칙</u> <u>이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